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제정 1996· 3· 1 조례 제 31호
- 개정 1996· 11· 15 조례 제 167호
- 개정 1999· 1· 11 조례 제 260호
-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개정 2001· 11· 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개정 2003· 2· 17 조례 제 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개정 2004· 11· 24 조례 제 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 개정 2004· 12· 13 조례 제 514호
- 개정 2006· 1· 3 조례 제 595호
- 개정 2007· 7· 2 조례 제 666호
- 개정 2009· 12· 10 조례 제 808호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 개정 2009· 12· 29 조례 제 815호
- 일부개정 2011· 4· 7 조례 제 886호
- 일부개정 2012· 5· 14 조례 제 928호
-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4· 8· 8 조례 제1039호
- 일부개정 2017· 12· 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 일부개정 2018· 3· 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9· 1·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2019· 1· 1 조례 제1465호
- 일부개정 2020· 12· 29 조례 제1662호
- 일부개정 2021· 6· 25 조례 제1714호
- 일부개정 2022· 9· 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23· 3·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일부개정 2025· 8· 8 조례 제22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22·9·30>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 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5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7 조례 제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2·17 조례 제4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11·24 조례 제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4·12·13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3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0 조례 제808호,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의 위임사무명란 중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에 체육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체육지원센터)			
1	이천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등	이천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 제3조의2	읍·면·동

부칙 <2009·12·2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7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4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위임사무명 중 “(건축과)”를 “(주택과)”로 하고, (건설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안전총괄과)			
1	소하천 정비법에서 발생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유수의 점용허가 2. 토지의 점용허가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 허가 4. 기타 부속물의 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4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2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 1.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2. 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 3.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4.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수수료 징수 5.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건설과)			
1	도로(시도, 도시계획 도로정비완료된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3. 가로등 관리 4.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승계 5. 노상적치물 정비 6.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도로법 제41조, 제44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4조 도로법 제45조 도로교통법 제70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 읍·면·동

부칙 <2019·1·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위임사무명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2019·1·1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5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별표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징수과”를 “세원관리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경제과”로, “자원관리과”를 “자원순환과”로, “건설과”를 “도로관리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종합허가과”를 “허가과”로, “체육진흥센터”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㉒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 <2025·8·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8. 8>

위 임 사 무(제2조 관련)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민원여권과)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주민등록법 제40조	읍·면·동
2	출입국사실증명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읍·면·동
(체육진흥과)				
1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제3항 및 조례 제2조 제1호 별표 1	읍·면·동
(기업경제과)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시장사용 허가 2. 사용료 조정 및 징수 3. 주소이동 신고 4. 시장사용폐지 신고 5. 사용취소 및 정지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1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세자료 조사 2. 고지서 송달 3. 시세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읍·면 읍·면 읍·면
(세원관리과)				
1	지방세(시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2. 체납세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읍·면·동 읍·면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급여변경 중 일부업무 (자활소득변경, 실제이자 소득변경, 업무지침변경,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읍·면·동
		2. 급여신청에 따른 접수		읍·면·동
		3. 수급자증명서 발급		읍·면·동
2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읍·면·동
(노인장애인과)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2.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읍·면
		3. 공설매장, 화장장 및 봉안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4.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2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읍·면
		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읍·면
2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애인등록신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읍·면·동
		2.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신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읍·면·동
		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읍·면·동
		4. 장애인등급조정신청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읍·면·동
		5. 장애인등록증반환명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읍·면·동
		6. 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읍·면·동
		7.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읍·면·동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발급(재발급)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27조	
		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읍·면·동
		9. 장애인자금의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5조, 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읍·면·동
(허가과)				
1	건축신고	1. 건축물 착공신고	건축법 제21조	읍·면
		2.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읍·면
		3. 용도변경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읍·면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20조	읍·면
		5.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	읍·면
(토지정보과)				
1	주소일괄변경업무에 관한 사무	1. 주소일괄변경 신청 처리	도로명주소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읍·면·동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읍·면·동
(건축과)				
1	건축물대장 작성	1. 건축물대장 작성(신고)	건축법 제38조	읍·면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다만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3	읍·면·동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외), 정면 가로형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 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읍면동 이상에 표시 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	읍면동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 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읍면동
		4.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 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읍면동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현수막 및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읍면동
		6.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 의 취소(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13조	읍면동
		7. 허가·신고·안전도 검사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 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 함)	옥외광고물법 제17조	읍면동
(건설과)				
1	소하천정비법에서 발생 한 권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유수의 점용허가 2. 토지의 점용허가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허가 4. 기타 부속물의 점용허가 5.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4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제7호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2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1항	읍면·동
		2. 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	읍면·동
		3.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	읍면·동
		4.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수수료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	읍면·동
		5.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제1항	읍면·동
(도로관리과)				
1	도로(시도, 도시계획 도로정비완료된 농어촌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점용허가 (연결, 토지점용, 굴착)	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읍면·동
		2.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읍면·동
		3. 가로등 관리	도로법 제2조	읍면·동
		4.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	도로법 제106조	읍면·동
		5.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도로법 제75조	읍면
		6. 도로교통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사항	도로교통법 제70조	읍면·동
(차량등록과)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77조제9항	읍면
		2. 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읍면
		3. 정비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
		4.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5. 과태료부과, 징수사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읍면
(환경보호과)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통지	이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13조 "	읍면 "
(자원순환과)				
1	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 생활민원 2.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읍면·동 읍면·동
(수도과)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취수원의 보호 2. 수질검사 의뢰 3. 개선조치 4. 건강진단 실시 5. 교육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5장 보칙 제23조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하수과)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처리(건축법으로 읍면장에 위임된 업무 중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처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법 제34조, 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읍면
(농업정책과)				
1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유수면관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읍면·동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2. 공작물의 신축·개축·중축·변경 또는 제거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읍·면·동
		3.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읍·면·동
		4. 식물 재배 및 채벌 허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읍·면·동
		5.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읍·면·동
2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읍·면·동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읍·면·동
		3. 점용료, 사용료의 가산금 징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읍·면·동
		4. 원상회복의무 명령면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읍·면·동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점·사용허가 기간 연장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읍·면·동
		2. 점·사용 목적 및 면적의 변경	"	읍·면·동
		3.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	읍·면·동
4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1.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면·동
		2. 점·사용의 정지	"	읍·면·동
		3.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읍·면·동
		4.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면·동
5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	1.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 처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읍·면·동
		2. 공유수면관리의 장애물 제거 명령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읍·면·동
		3. 공익을 위한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읍·면·동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6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농지법 제20조	읍면
		2. 농지불법전용 지도 및 단속(원상회복 및 고발)	농지법 제39조, 제42조	읍면
		3. 불법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읍면
		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동
		5. 농지개량행위 신고	농지법 제41조의3	읍면
7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읍면
		2. 영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농업인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은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	”	읍면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영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세대당 1,500제곱미터이하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	읍면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세대당 3,300제곱미터이하)	”	읍면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단체당 7,000제곱미터이하)	”	읍면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제	”	읍면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정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비상대피시설 라.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7. 영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비영리법인당 7,000제곱미터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세대 또는 법인당 10,000제곱미터 이하)	" " "	읍면 읍면
8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300제곱미터 이하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법 제36조	읍면